

「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0조)
- 다.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2조~제7조, 제11조~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4-H활동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을 근거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'25년 12월말로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구미시 4-H단체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현재 기금의 용도가 단순히 장학금·여비·운영비 지급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내실있는 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임.